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농어업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지원하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 지원한도액 상향 (안 제7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은 2010년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이후 15년 간 한도액의 변동이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향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또한, 최근 5년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시군 농협에 대여한 금액 대비 실제 농가에서 대출을 받은 비율이 '20년 56%, '21년 36%, '22년 50%, '23년 41%, '24년 42%로 대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지원 한도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농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음에 따라 농어촌개발기금의 융자지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추진실적〉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 산 액	138억원	115억원	108억원	98억원	109억원
대여금액(A)	108억원	108억원	103억원	93억원	105억원
대출내역(B)	45억원	44억원	52억원	34억원	59억원
대출액 비율(B/A)	42%	41%	50%	36%	56%

※ 대여액(도→농협 충북본부→시군농협) / 대출액(시군농협→농가)

- 이에 따라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7조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용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 것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1억원에서 3억원, 법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법인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음
- 타 광역자치단체 농어촌기금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한도액이 높은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도액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되는 한도액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타 광역자치단체(도단위) 농어촌기금 비교〉

구분	시설자금		운영자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경기	1억원	5억원	0.6억원	2억원
강원	3억원	10억원	3억원	10억원
충북	1억원 (개정)3억원	5억원 (개정)10억원	0.5억원 (개정)1억원	0.5억원 (개정)1억원 ※ 농수산물의 유통안정 등 필요시 10억원
충남	일반 0.5억원 청년농 1억원	5억원	일반 0.5억원 청년농 1억원	5억원
전북	수매저장 5억원 가공생산 5억원 경영회생 1억원	수매저장 20억원 가공생산 20억원 경영회생 3억원	1억원	5억원
전남	일반 1억원 학사농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업자 10억원	2억원	일반 1억원 학사농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업자 10억원	2억원
경북	일반 2억원 청년농 2억원 스마트팜 5억원	일반 5억원 청년농 5억원 스마트팜 10억원	일반 2억원 청년농 2억원 스마트팜 5억원	일반 5억원 청년농 5억원 스마트팜 10억원
경남	0.5억원	3억원	0.5억원	0.7억원
제주	1억원	3억원	1억원	3억원

다. 종합의견

- (필요성)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은 2010년 상향 이후 15년 간 변동이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부담 가중으로 상향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낮은 한도액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낮은 대출률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따라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타 시도 농어촌기금과의 비교 및 형평성에 맞게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새롭게 설정하였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